

4.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4
----------	-----

제출년월일 : 2003. 11.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별표 2]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과 상이한 것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제10호(제1호 내지 제9호 이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에 대한 점용료 세분

- 농업 및 식물재배 : 0.005 → 0.01
- 주 택 : 0.005 → 0.025

나.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용어를 정비함

- [별표]제1호 점용물의 종류중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함

다. 소형 점용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용면적·길이 등을 산정할 때 1㎡(또는 1m)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던 것을 0.5㎡(또는 0.5m)이상 1㎡(또는 1m)미만의 경우에는 1㎡(또는 1m)로 계산함

3. 개정근거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점용료의 산정기준) - [별표 2]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호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란중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것”으로 하고 동표의 제1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단위: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 재배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별표의 비고란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 또는 0.5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 이상 1㎡미만 또는 0.5m이상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또는 1m로 계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생략)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현행과 같음)			
(별 표)				(별 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와 관련)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와 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단위	기간단위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공중전화통신시설물	(생략)			1. 전주·공중전화통신시설물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생략)	(생략)	(생략)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점용면적	1년		농업 및 식물재배		도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기타	1m'			주택	점용면적 1m'	도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도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 고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평방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길이·표시면적 등이 1평방미터 또는 1미터미만의 경우에는 1평방미터 또는 1미터로 산정한다.

※ 비 고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 또는 0.5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 이상 1㎡미만 또는 0.5m 이상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또는 1m로 계산한다.